

투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

GS골드스코프주식투자신탁1호

< 투자 설명서 >

이 투자설명서는 “GS골드스코프주식투자신탁1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GS자산운용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GS골드스콧프주식투자신탁1호

투자신탁명	GS골드스콧프주식투자신탁1호
자산운용사명	GS자산운용 주식회사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 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투자증권(주) (☎ 768-7000, www.wooriwm.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 LIG투자증권(주) (☎ 1544-7600, www.ligstock.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 키움증권(주) (☎ 1544-9000, www.kiwoom.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 한국투자증권(주) (☎ 1544-5000, www.truefriend.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 리딩투자증권(주) (☎ 1544-7004, www.leading.co.kr)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 <p>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p> <p>※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p>
작성기준일	2008년 10월 일
투자설명서 비치 · 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gsasset.co.kr)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 3. 수수료·보수, 과세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 3.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 1. 자산운용회사
회사개요, 주요업무,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 관련사항
- 2. 판매회사
회사개요, 주요업무
- 3. 수탁회사
회사개요, 주요업무
-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개요, 주요업무
-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개요, 주요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 1.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 총회 /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용어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정리

※ 본문에 기울임체로 기재된 단어들은 투자설명서 마지막의 ‘<참고> 펀드 용어정리’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 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4쪽)

1. 명 칭 : GS골드스코프주식투자신탁1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 87734)
2. 펀드존속기간 :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3. 분 류 :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 GS자산운용 주식회사

II 투자정보(☞본문 4~8쪽)

구 분	주 요 내 용														
1. 투자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등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 추구 * 비교지수 : KOSPI*95% + Call금리*5% (비교지수는 GS자산운용 홈페이지(www.gsasset.co.kr)에서 확인가능)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 • 투자신탁재산의 40% 이하를 채권 등에 투자 														
3. 주요 투자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이 국내주식이므로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2등급이므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으며,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국내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중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5. 기준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기구(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www.gsasset.co.kr)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성명</th> <th rowspan="2">나이</th> <th rowspan="2">직위</th> <th colspan="2">운용현황</th> <th rowspan="2">주요운용경력</th> </tr> <tr> <th>운용중인 펀드수</th> <th>운용중인 자산규모</th> </tr> </thead> <tbody> <tr> <td>임현근</td> <td>38</td> <td>팀장</td> <td>-</td> <td>-</td> <td>- 우리투자증권 WRAP 운용팀 - 현 GS자산운용 주식운용1팀장</td> </tr> </tbody> </table> <p>※ 이 펀드의 운용은 주식운용1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p>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임현근	38	팀장	-	-	- 우리투자증권 WRAP 운용팀 - 현 GS자산운용 주식운용1팀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임현근	38	팀장	-	-	- 우리투자증권 WRAP 운용팀 - 현 GS자산운용 주식운용1팀장										
7.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p>이 실적은 과거성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p> <p>해당사항 없음</p>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GS골드스코프주식투자신탁1호 (자산운용협회코드 : 87734)														
2. 펀드존속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3. 분류	<p>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p> <table border="1"> <thead> <tr> <th>Class 구분</th> <th>판매기준</th> </tr> </thead> <tbody> <tr> <td>Class A1 수익증권</td> <td>선취판매수수료 징구</td> </tr> <tr> <td>Class C1 수익증권</td> <td>제한없음</td> </tr> <tr> <td>Class C2 수익증권</td> <td>납입금액 50억 이상</td> </tr> <tr> <td>Class C-e 수익증권</td> <td>온라인 전용</td> </tr> <tr> <td>Class C-w 수익증권</td> <td>일임형 Wrap 전용</td> </tr> <tr> <td>Class C-H 수익증권</td> <td>장기주택마련저축 전용</td> </tr> </tbody> </table> <p>* 이 투자신탁의 모든 클래스는 클래스간 전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p>	Class 구분	판매기준	Class A1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Class C1 수익증권	제한없음	Class C2 수익증권	납입금액 50억 이상	Class C-e 수익증권	온라인 전용	Class C-w 수익증권	일임형 Wrap 전용	Class C-H 수익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전용
Class 구분	판매기준														
Class A1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Class C1 수익증권	제한없음														
Class C2 수익증권	납입금액 50억 이상														
Class C-e 수익증권	온라인 전용														
Class C-w 수익증권	일임형 Wrap 전용														
Class C-H 수익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전용														
4. 자산운용회사	GS자산운용주식회사														
5. 최초설정일등 연혁	<p>2008년 09월 10일 설정</p> <p>2008년 10월 21일 약관변경(Class C-H<장기주택마련>수익증권 신설)</p> <p>2008년 10월 24일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 관련 약관변경</p>														
6. 수탁고 추이	해당사항 없음														
7. 해지사유	<p>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p> <p>(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p> <p>(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p>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 KOSPI*95% + Call금리*5%

(비교지수는 GS자산운용 홈페이지(www.gsasset.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산운용회사 · 판매회사 ·

수탁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주요 투자전략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KOSPI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 중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종목을 선택하며, 집중투자를 통해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 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투자위험

(1)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 대부분을 주식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3)주식가격 변동위험

-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펀드규모위험

-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6)기타위험

- 금리변동위험, 유동성 위험,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연기 위험 등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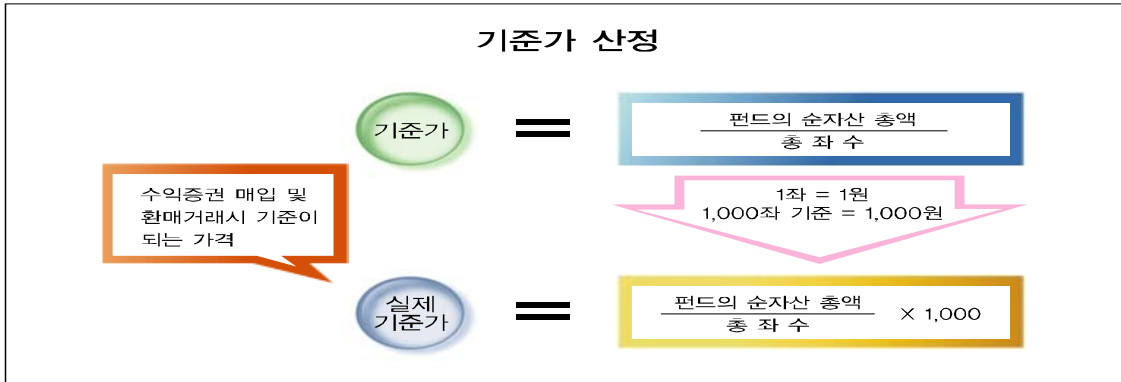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원금손실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를 1등급으로 하여 가장 낮은 위험도를 나타내는 5등급까지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기준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위험도가 높은 2등급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국내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국내주식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등급분류 기준]

1등급	매우높은 위험	이머징 주식/채권투자
2등급	높은 위험	주식형(성장형), 주식혼합형(비적격채권), 주식인덱스형
3등급	중간 위험	주식혼합형(적격채권), 채권혼합형(회사채이상), ELF(일반형)
4등급	낮은 위험	채권형(비적격채권), 채권혼합형(국공채이상), ELF(원금보존추구형)
5등급	매우낮은 위험	MMF, 채권형(적격채권), 국제 우량채권형(국제신용평가등급 A이상)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 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 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gsasset.co.kr)·판매회사·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소속부서	직위	운용중인 자산규모	주요경력
임현근	주식운용1팀	팀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투자증권 Wrap운용팀 - 현 GS자산운용 주식운용1팀장

※ 이 펀드의 운용은 주식운용1팀 담당이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I.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평균 수익률 :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 해당사항 없음

Ⅲ. 수수료 · 보수, 과세

1.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Class A1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환매 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Class C1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Class C2	환매 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Class C-e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Class C-w			
Class C-H			

2.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순자산총액의 %)	지급시기
Class A1	운용회사 보수	0.75%
	판매회사 보수	0.70%
	수탁회사 보수	0.03%
	일반사무관리 보수	0.02%
	기타비용	0.50%
	총보수 · 비용비율	2.00%
Class C1	운용회사 보수	0.75%
	판매회사 보수	1.70%
	수탁회사 보수	0.03%
	일반사무관리 보수	0.02%
	기타비용	0.50%
	총보수 · 비용비율	3.00%
Class C2	운용회사 보수	0.75%
	판매회사 보수	0.50%
	수탁회사 보수	0.03%
	일반사무관리 보수	0.02%
	기타비용	0.50%
	총보수 · 비용비율	1.80%
Class C-e	운용회사 보수	0.75%
	판매회사 보수	1.36%

GS골드스코프주식투자신탁1호

	수탁회사 보수	0.03%	사유발생시 -
	일반사무관리 보수	0.02%	
	기타비용	0.50%	
	총보수·비용비율	2.66%	
Class C-w	운용회사 보수	0.75%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0.00%	
	수탁회사 보수	0.03%	
	일반사무관리 보수	0.02%	
	기타비용	0.50%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비율	1.30%	-
Class C-H	운용회사 보수	0.75%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1.40%	
	수탁회사 보수	0.03%	
	일반사무관리 보수	0.02%	
	기타비용	0.50%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비율	2.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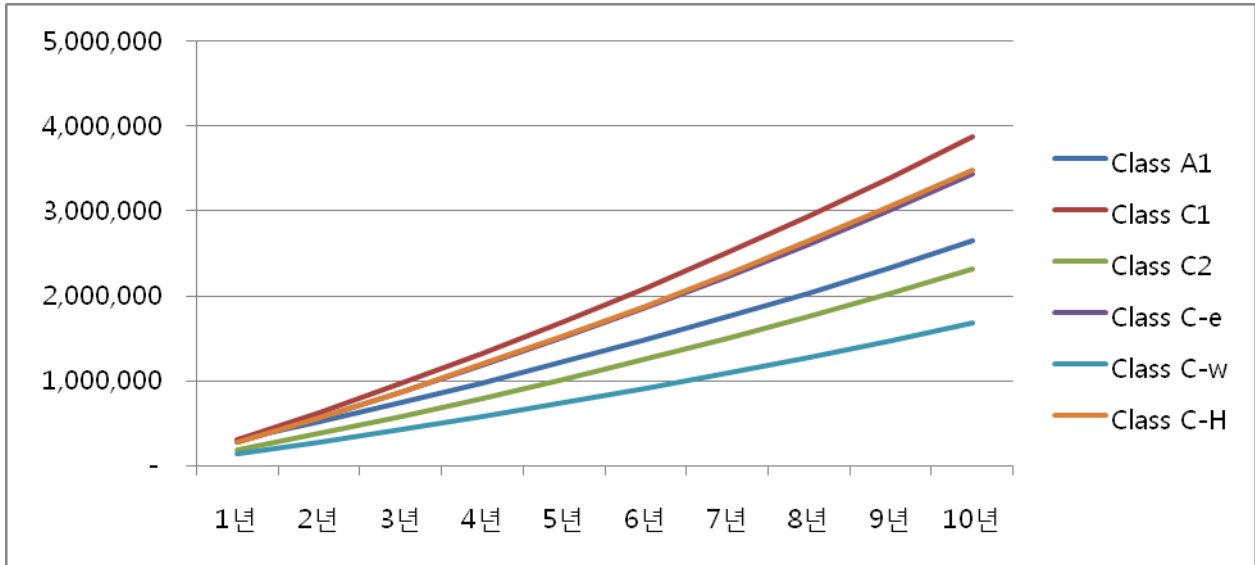
주) 기타비용이란 유가증권 매매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투자신탁의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Class A1	301,980	738,874	1,220,549	2,651,948
Class C1	307,500	969,394	1,699,132	3,867,702
Class C2	184,500	581,636	1,019,479	2,320,621
Class C-e	272,650	859,529	1,506,563	3,429,362
Class C-w	133,250	420,071	736,290	1,676,004
Class C-H	276,750	872,454	1,529,218	3,480,932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 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을

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Class C-H<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의 상품 주요 내용**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 가입시한 : 2009년12월31일까지

- 과세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가입한도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음.

- 저축계약기간 : 7년 이상 (당해 기간 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감면세액추징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함.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주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주1)법시행령 제80조제5항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을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소득공제 : 저축 가입대상자가 근로소득자로서 세대주인 경우에는 당해년도 납입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추징 : 이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

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간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함)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 받은 세액이 해지 추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정함.

※ 저축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을 추정하지 아니함.

1. 당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주2)}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주2)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장기적립식 투자자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 - 2009.12.31까지의 가입자**

-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 혜택이 추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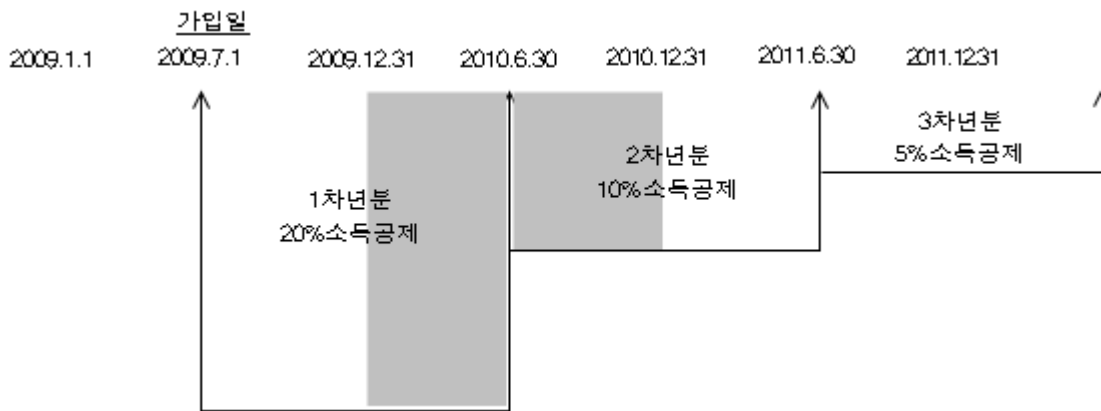
-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는 2008년10월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1) 매입 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5시[오후 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15시[오후 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구 분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15시[오후3시] 이전 납입시	자금납입일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15시[오후3시] 경과 후 납입시	자금납입일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를 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시[오후 3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구 분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15시[오후3시] 이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수령일
15시[오후3시] 경과 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수령일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모든 Class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며,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합니다.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 [오후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가 15시[오후3시]경과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환매대금의 지급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1) 이익분배금의 지급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 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2)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단, **Class C-H<장기주택마련>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 14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3)상환금등의 지급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GS골드스코프주식투자신탁1호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약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 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 ·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KOSPI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 국내 주식에는 유가증권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신탁약관 제3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주식 편입비중의 약 50%이상을 한국의 저평가된 Leading Company에 투자합니다.

- * Leading Company란?
 - 탁월한 경쟁력으로 시장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 한국주식시장의 대표기업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능가할 수 있는 기업

②시장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적절한 Key Driver를 찾아내서 투자로 연결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 Key Driver란?
 -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변수 중, 특정시점에서 기업가치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 및 테마로 주가의 방향성, 지속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
- * Key Driver에 주목해야되는 이유
 - 시장에서 주목하는 Key Driver는 변화하며, Leading Company중에서도 Key Driver의 변화에 따라 성과가 달리 나타납니다.
 - 특정시점의 Key Driver를 찾고, Key Driver를 가장 잘 나타내는 Key 지표의 방향성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수혜 종목/업종에 집중투자 할 경우 초과수익 획득이 가능합니다.

③저평가된 수익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종목 발굴 및 투자로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 저평가된 수익성장 잠재력의 발견이란?
 - 기업이익이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
 - 기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 기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기업

※ 상기의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위험

(1)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GS골드스코프주식투자신탁1호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 대부분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 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 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투자신탁의 상세정보'에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의 2. 환매관련 유의사항/(2)수익증권의 환매연기'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3. 투자대상

GS골드스코프주식투자신탁1호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60% 이상 단,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동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성질을 구비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②	채권	40% 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40% 이하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⑤	주식 및 채권 장내파생 상품	15%이하 위탁증거금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⑥	금리스왑거래	100%이하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이 10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⑦	수익증권 등	5% 이하 (단, ETF는 30% 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⑧	투자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⑨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합니다.

⑩	투자증권 차입	20% 이하	①~④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합니다.
⑪	단기대출, 금융 기관에의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⑫	은행계정 대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주)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 위의 ①②③④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 4, 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②③④⑥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1) 운용제한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내용
①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②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제2조제7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채무증서 및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

	<p>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증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증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p>
③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⑤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이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한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⑥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⑦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⑧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약관 제37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증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은 약관 제37조제1항제8호, 제3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상장채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비상장채권(②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자산유동화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⑥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에서 발표하는 가격
⑦장외파생상품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단, ELW의 경우 발행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으로 평가
⑧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i>기준가격</i> . 다만,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투자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거래	(채권부분) ○ 선정주기: 분기 1 회 ○ 평가자: 채권운용본부 운용역 등 ○ 평가기준: 리서치 30%, 거래능력 50%, 중개사리스크 10%, 중개수수료/기타 10%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15개의 거래중개회사 선정 - 상기 15개 중개회사 외에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를 위한 단기채권, CD 및 CP 중개를 위하여 추가 5개사를 둘 수 있음. <p>(주식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주기 : 분기 1회 ○평가자 : 주식운용본부 운용역 등 ○평가기준 : 리서치 자료 25%, 기업방문 및 세미나 주선 25%, 거래의 편의성 및 정확성 20%, Back office의 서비스 10%, 공헌도 및 기타 20%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20개 내외의 거래중개회사 선정
장내파생상품 거래	<p>(채권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주기: 분기 1회 ○평가자: 채권운용본부 운용역 등 ○평가기준: 리서치 30%, 거래능력 50%, 중개사리스크 10%, 중개수수료/기타 10%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6개의 거래중개회사 선정 <p>(주식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주기: 분기 1회 ○평가자: 주식운용본부 운용역 등 ○평가기준: 리서치 자료 40%, 거래의 편의성 및 정확성 30%, Back office의 서비스 10%, 공헌도 및 기타 20%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5개의 거래중개회사 선정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환매관련 유의사항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 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 또는 판매회사 인터넷에서 직접 환매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자수 증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는 약관 제21조 내지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후에 환매 청구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3)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① 약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가.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 · 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 · 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가.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② 위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 3.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 ③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⑤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GS골드스코프주식투자신탁1호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시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 ⑥ 환매연기사유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합니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약관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그 통지를 증권에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약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위의 규정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약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 ⑤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이익 분배 등 관련 유의사항

(1) 이익분배 등

- ①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는 약관 제4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③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단, Class C-H<장기주택마련>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④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 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약관 제14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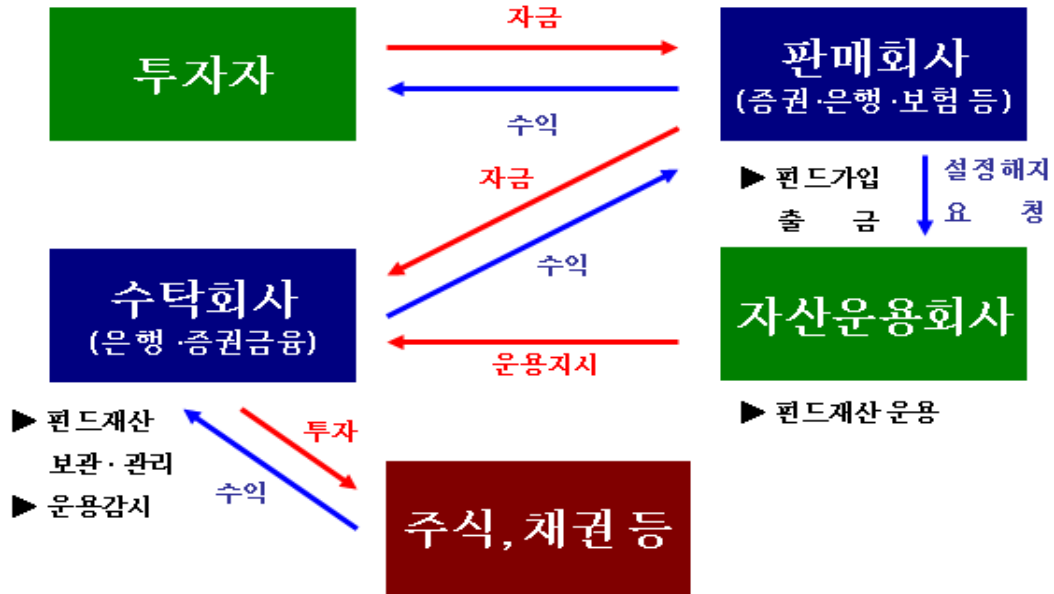
(2) 상환금등의 지급

- ①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자산운용회사가 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들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에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등

-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약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②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GS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T. 02-6910-1100
회사연혁	- 2008.07 GS자산운용(주) 설립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헤지
-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GS골드스코프주식투자신탁1호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신한아이타스(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에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해당사항 없음

4. 운용자산 규모

해당사항 없음

5. 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에 관한 사항

소속	성명(나이)	주요 경력	비고
주식운용1팀	임현근 (38세)	- 전남대학교 회계학 학사 - 우리투자증권 Wrap운용팀 - 현 GS자산운용 주식운용1팀장	팀운용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1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펀드매니저입니다.

※ 상기 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회사연혁
우리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02)768-7000	www.wooriwm.com	설립일 : 1969.1.

LIG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1544-7600	www.ligstock.com	설립일 : 2008.6
키움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1544-9000	www.kiwoom.com	설립일 : 2000.5
한국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1544-5000	www.truefriend.com	설립일 : 1974.7
리딩투자증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 1544-7004	www.leading.co.kr	설립일 : 2000.3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 수익증권 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②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제5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책임)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대경빌딩 120
전화번호	756-0505
홈페이지	http://www.shinhan.com/
회사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02 신탁업무 개시 - 2001.09 “신한금융지주회사” 출범 - 2006.04 통합 신한은행(구신한+ 구조흥)출범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수탁회사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의 법령·신탁약관에 부합 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자산운용회사가 복수 수탁회사를 사용할 경우 제외)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전화번호	2168-0400
홈페이지	http://www.aitas.co.kr/
회사연혁	-2000.06 법인설립 -2002.04 AITAS-AMS 자산운용지원시스템 개발완료 및 서비스 개시 -2004.10 채권트레이딩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개시 -2007.08 운용전략시스템(AITAS-BIGS)개발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자산운용회사로부터 다음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합니다.

-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 자산운용회사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 ①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연락처	연혁
한국채권평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02)3215-1400	설립일 : 2000.6.20 자본금 : 30억원
KIS채권평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삼천리빌딩 2층	02)399-3350	설립일 : 2000.5.29 자본금 : 50억원
NICE채권평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5층	02)398-3900	설립일 : 2000.6.16 자본금 : 47.5억원

2.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 채권관련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수탁회사의 변경 / 신탁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잔여재산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들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

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1) 자산운용회사등의 손해배상 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2)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 회계감사인은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결과 중요한 사항을 회계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의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 및 GS자산운용 인터넷(www.gsasset.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수탁회사보고서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가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탁회사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약관변경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 약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가 약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로부터 1월이내 또는 약관 제49조3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기간(이하 “이의신청기간”이라 한다)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가 신탁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약관 제49조제3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약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5) 기타 장부·서류

-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gsasset.co.kr),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 및 양수
 -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2) 의결권 행사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역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GS골드스코프주식투자신탁1호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위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참 고> 펀드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 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과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해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 년 10 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사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혼합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간접투자재산을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식혼합형과 채권혼합형으로 구분합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재산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p>판매수수료</p>	<p>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p>
<p>헤지</p>	<p>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p>
<p>환매</p>	<p>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p>
<p>환매수수료</p>	<p>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p>
<p>환매조건부채권</p>	<p>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p>
<p>환헤지</p>	<p>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p>

GS골드스코프주식투자신탁1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_____

판 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